

대법원 2021. 11. 25 선고 2021재다1721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6. 15 자 2021재나268 결정
대법원 2021. 11. 25 자 2021재다17219 결정
서울고등법원 2010. 4. 16 선고 2010나12106 판결
대법원 2010. 1. 14 선고 2007다5229 판결
서울고등법원 2006. 12. 5 선고 2006나21127 판결
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2. 8 선고 2005가단188227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피고) F 주식회사

피고(재심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림

피고보조참가인 1. 서울특별시

2. 서울특별시 종로구

3. 한국자산관리공사

판결 선고 2021. 11. 25.
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5229 판결

주 문
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피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직권으로 살펴본다.

피고(재심원고)는 “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”라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,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그러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의 ‘확정된 종국판결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[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3재다27(본소), 34(반소)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재다455 판결 등 참조], 환송판결을 재심의 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정화, 대법관 김선수, 주 심 대법관 노태악, 대법관 오경미